

# 재무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24조 2호, 제33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연맹의 재무상태, 운영성과를 연맹 회원과 임원 및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처리 방법,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재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운영성과표는 일정기간 동안 연맹의 활동보고서를 말한다.
- ②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보통순자산은 사용 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제한순자산은 기부자가 원금 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의 사용용도나 시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 자산이다. 사용제한순자산은 명시된 사용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기간이 경과 하면 보통순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3. 기본 순자산은 법적으로 또는 기부자가 영구적으로 원금의 사용, 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의 사용을 제한한 자산이다.
- ③ 현금성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화,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현금과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현금등가물로 구성된다.
- ④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단기 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고 장기

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⑤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은 기부자에 의해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지정된 현금자산,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을 말한다.
- ⑥ 사업이란 연맹이 추구하는 본연의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 조직의 구성원 또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⑦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은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말하며, 현금 구성항목간의 이동은 현금흐름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⑧ 현금흐름표상의 사업활동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 ⑨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은 자산(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및 단기 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말한다.
- ⑩ 현금흐름표상의 재무활동”은 차입금의 변동 및 자산(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및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회계처리 원칙)** 연맹의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한 복식부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재무제표에는 연맹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한다.

**제 4 조 (재무제표의 종류)** 연맹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와 주석을 포함한다.

**제 5 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금융자산의 평가)** 연맹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은 발생주의와 취득원가주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되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현행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제 6 조 (주석)**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석의 구분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형식)** 재무제표는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과 예산을 대비하여 작성하며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에 있어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2 장 재무상태표

**제 8 조 (표시 내용)** 재무상태표는 연맹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세부보고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9 조 (항목 나열의 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나열한다.

**제 10 조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투자증권과 단기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맹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성항목 별로 별도 표시하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1 조 (유형자산의 표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설비자산 등 적절한 유형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항목 각각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 등의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2 조 (기부금품의 표시방법)** 기부자가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현금자산,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각각 유무형자산취득용 자산과 투자용 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3 조 (총액표시의 원칙)**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등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순자산의 구분)** 순자산은 자산 사용의 제한에 따라 기본 순자산, 사용제한 순자산, 보통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산 사용에 대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5 조 (기본 순자산)** 기본순자산 중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자산 및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내에 구분 표시하거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6 조 (사용제한 순자산)** 사용제한순자산 중 특정 활동에 사용될 순자산,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되어야 할 순자산, 특정 기간에 사용될 순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순자산은 사용제한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17 조 (보통 순자산)** 보통 순자산은 사용제한 순자산 또는 기본 순자산으로부터의 운용수익 중 사용에 제한이 없는 금액,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용도 제한이 없는 기부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 제 3 장 운영성과표

**제 18 조 (표시 내용)** 운영성과표는 연맹 전체를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순자산의 변화를 표시한다.

**제 19 조 (표시 구분)**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본순자산, 사용제한순자산, 보통순자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투자손익, 사업비용, 모금비용,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 20 조 (총액표시원칙)**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장 현금흐름표

**제 21 조 (표시 내용)**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 상 직접법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 22 조 (표시 형식)**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제 5 장 주 석

**제 23 조 (주석 표시 내용)** 다음 사항은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① 연맹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 사업환경변화(연맹의 존속가능성에대한 중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 포함)
- ② 연맹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포함)
- ③ 회계변경의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친 중요한 영향
- ④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중 사용이 제한된 현금자산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에 포함한다.
  1. 기부자가 용도를 제한한 자산의 내역과 금액
  2. 담보제공자산의 내역과 금액
  3. 통합하여 보고한 재무제표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내역과 금액
  4. 사용제한순자산과 기본순자산의 내역, 금액과 변동내용
  5. 연불로 구입하는 자산의 내역과 금액
  6. 기부 받은 비현금자산의 내역과 금액
  7. 교환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금액

8. 기타 위와 유사한 항목의 내역과 금액
- ⑤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과 기타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⑥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⑦ 관련 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

## 제 6 장 수익인식 시점과 감가상각

**제 24 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연맹이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제 25 조 (서비스 기부의 인식)** 연맹이 서비스로 기부를 받는 2003년 3월 14일에 제정 발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연맹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② 기부가 없으면 그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6 조 (기부품의 인식)** 기부 받은 전시 장비 또는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 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②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③ 연맹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한다.

**제 27 조 (기부의 표시)** 기부금은 운영성과표에 기본순자산의 증가, 사용제한순자산의 증가, 보통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부 받은 회계기간 내에 기부금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보통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한다.

**제 28 조 (회비수입의 인식)** 회비수입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제 29 조 (감가상각)** 연맹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전시 장비,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유물 등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당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 ② 재무상태표일 현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주요 유형별 성격과 금액
- ③ 재무상태표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의 주요 유형별 금액과 총액
- ④ 감가상각방법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2003.3.14.제정)를 우선 적용하고, 이차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원용한다. 다만 수익사업의 회계처리에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